

5. 동성혼, 근친혼

[수업을 위한 질문들]

1. 동성혼과 근친혼의 차이는 무엇인가?
2. 동성혼 근친혼을 왜 하는가?
3. 동성혼, 근친혼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4. 동성혼, 근친혼을 금지하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관점은? 同姓의 결혼은 非禮이다.(문화적 이유)
5. 문제는 금혼의 범위이다. 금혼의 범위는 얼마나 되었으면 좋겠나? 금혼 범위는 시대, 공간에 따라 다르다.

1. 왕실의 동성혼과 근친혼

- 왕실의 동성혼과 근친혼을 살펴본다.

○ 史臣이 말하기를, 妻를 취함에 同姓을 취하지 않는 것이 禮이니 비록 百世가 지나도 婚姻이 通해서는 안 된다. 惠宗이 公主를 동생의 妻로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인가? 時俗이 그랬기 때문이다. 太祖는 不世出의 군주로서 古昔을 본받아 俗을 바꾸려는 뜻이 있었으나 習俗을 좋아하여 능히 바꿀 수는 없었다. 이로부터 이후로는 家法이라 생각하여 편히 여기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中葉 이래로 비록 堂從의 親은 금지했으나 同姓은 역시 끝내 금하지 못했다. 傳에 말하기를, 男女가 同姓이며 후손을 낳음이 번성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同姓이 모름지기 그러한데 하물며 至親이겠는가 지금 姑, 姊, 妹를 취한 자를 보니 대략 無後가 많아서 5백년의 오랜 세월을 지났어도 宗支가 끝내 수십 인에 불과하다. 그런 후에야 先王이 禮를 제정한 뜻이 심원함을 알 수 있으니 가히 경계하지 않겠는가.(고려사절요, 권2, 혜종 2년)

2. 지배층의 동성혼과 근친혼

- 지배층의 동성혼 근친혼을 살펴본다.

- 유증경 사례

○ 庾仲卿은 공부상서 遼의 아들이다. 制하여 강등하여 음직을 주었다. 식목도감사 시중 李子淵 등 11인이 반박하여 말하기를 “仲卿의 외조인 평장 李龔이 형인 소경 蒙의 딸을 奸하여 仲卿의 어미를 낳았으니 仲卿은 조정의 반열에 나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金元鼎 등 4인이 議하여 말하기를 “이는 李龔의 죄이지 仲卿 부자가 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공신 黔弼의 후예이니 仕路를 막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前制에 따라 내려 음직을 주십시오.” 하니, 왕이 元鼎 등의 議를 따랐다.(고려사절요, 권 5, 문종 12년 5월)

- 대공친 금혼

○ 大功親에게 시집가서 낳은 경우는 仕路를 금한다.(고려사, 권75, 선거지 3, 銓注, 限職, 문종 12년 5월)

○ 이부상서 崔奭 등이 아뢰기를, “지난해 진사 魯準은 그 아버지가 법률을 범하여 大功親을 취했으니 所生은 청컨대 종신토록 禁錮하십시오” 하니, 왕이 말하기를, “選舉하여 임용함은 常例에 구애받지 말고 가히 여러 진사와 더불어 아울러 官秩을 주어 朝籍에 통하게 하라”고 하였다. 재상 文正 등이 議하여 말하기를 “집을 가지런히 한 후에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인데, 준의 아버지는 혼인을 바르게 하지 못해 인륜을 더럽히고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학을 숭상하므로 선비 등용이 급하니 청컨대 階職을 내려 제수하십시오” 하므로, 따랐다.(고려사절요, 권5, 문종 35년 6월)

- 同父異母姉妹 금혼

○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자매와 혼인을 범하여 낳은 경우는 仕路를 禁錮한다.(고려사, 권75, 선거지 3, 限職)

- 소공친 금혼

○ 判. 小功親에게 시집가서 낳은 경우는 大功親의 예에 따라 仕路를 금한다.(고려사, 권76, 선거지 3, 숙종 원년 2월)

- 공친 금혼과 허통

○ 功親의 婚嫁를 금지하였다.(고려사, 권84, 형법지 1, 숙종 원년 6월)

○ 判. 大小功親에게 시집가서 낳은 경우는 모두 許通한다.(고려사, 권75, 선거지 3, 숙

종 6년 10월)

○ 李資諒은 (중략) 외척이므로 좌우위녹사 참군사에 임명되었다. 예종조에 尹瓘을 따라가 여진을 정벌하는 데 공을 세워 감찰어사를 받았고, 여러 번 옮겨 형부시랑 추밀원지주사가 되었다. (중략) 인종이 즉위하여 형부상서 추밀원사에 임명했고, 병이 깊어지자 守司空 中書侍郎平章事に 임명했다. (중략) 李資仁의 딸을 취하여 2녀를 낳았고 아들은 없었다.(고려사, 권95, 열전 8, 이자연 附 이자량)

- 공친 금혼

○ 判. 大小功親과 犯嫁한 자는 禁錮하라.(고려사, 권75, 선거지 3, 예종 11년 8월)

○ 判. 大小功親에게 시집가서 낳은 경우는 일찍이 7품에 제한했으나 지금부터는 仕路를 일체 금한다.(고려사, 권75, 선거지 3, 인종 12년 12월)

○ 毅宗이 즉위하여 비로소 堂姑, 從姊妹, 堂姪女, 兄孫女와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했다.(고려사, 권84, 형법지 1, 姦非)

○ 判. 大小功親 내에서는 다만 4촌 이상의 犯嫁를 금했고 5~6촌의 親黨은 일찍이 禁嫁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많이 서로 昏嫁하여 드디어 풍속을 이루었으니 갑자기 금하기가 쉽지 않다. 이전에 犯하여 낳은 사람은 仕路에 許通하고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禁錮하라.(고려사, 권95, 선거지 3, 限職, 의종 원년 12월)

- 외사촌 금혼

○ 憲司가 外家 4촌과의 통혼을 금하기를 청했다.(고려사, 권84, 형법지 1, 충렬왕 34년 윤11월)

- 처의 자매, 異姓의 재종 자매 금혼

○ 監察司가 사람이 처가 죽어 妻의 姊妹를 취하거나 異姓의 再從 姊妹를 취하는 것을 금하기를 청했다.(고려사, 권84, 형법지 1, 姦非, 공민왕 16년 5월)

- 동성혼 근친혼 처벌

○ 期功親 이상에게 犯嫁한 자나 (중략) 判禁 이후에 同姓 간에 혼인한 자는 (중략) 그

토지는 사람이 陳告하면 科에 따라 받는 것을 허락한다.(고려사, 권90, 식화지 1)